**제1조(목적)**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.

**제2조(계약기간)**

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.

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**제3조(급여범위)**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'갑'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.

**제4조(급여이용 및 제공)**

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**서비스일정표**에 의한다.

② '갑'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.

| 구 분 | 이 용 일 | 이 용 시 간 |
|---|---|---|
| **이용시간 (1)** | □ 월 □ 화 □ 수 □ 목<br>□ 금 □ 토 □ 일 | 오전<br>오후 시 분 ~<br>오전<br>오후 시 분 |
| **이용시간 (2)** | □ 월 □ 화 □ 수 □ 목<br>□ 금 □ 토 □ 일 | 오전<br>오후 시 분 ~<br>오전<br>오후 시 분 |

※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 란을 늘려서 기록함

※ '갑' 또는 '병'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'을'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.

③ '을'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. 다만,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
| 구 분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 일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**이용시간1** | | | | | | | | ***※이용시간2는 1일 2회 이용할 경우 기재함*** |
| **이용시간2** | | | | | | | | |

④ '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'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'을'은 30%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
⑤ 22:00~06: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'을'은 30%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
⑥ '을'은 익 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'갑'(또는 병')과 협의하여 **서비스일정표**를 작성하여 익 월 1일 이전까지 '갑' 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하며 **서비스일정표**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.

**제5조(계약자 의무)**

① '갑'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월 이용료 납부
2.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
3.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
4. 기타 '을'과 협의한 규칙 이행

② '을'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1.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
2. 급여제공 중 '갑'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'병'에게 통보
3. 급여제공시간에 '갑'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
4. 급여제공 중 알게 된 '갑'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
   (단,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)
5. 이용 상담,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
6.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
7. 기타 '갑'(또는 '병')의 요청에 협조

③ '병'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1. '갑'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2. '갑'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
3.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'을'에게 통보
4. '갑'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'을'에게 통보
5. 기타 '을'의 협조요청 이행

**제6조(계약해지 요건)**

① '갑'(또는 '병')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을'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2.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3.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4. 기타 '갑'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② '을'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갑'(또는 '을')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2. '갑'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3. '갑'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4. '갑'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5.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'갑'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6. '갑'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

**제7조(계약의 해지)**

**① '갑'(또는'병')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유선 또는 구두 상으로 '을"에게 통보한다.**

**② '을'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'갑'과 '병'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.**

**제8조(이용료 납부)**

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㉠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| 구 분 | 금 액 (원) | 구 분 | 금 액 (원) |
|---|---|---|---|
| **30분 이상** | 16,940 | **150분 이상** | 49,160 |
| **60분 이상** | 24,580 | **180분 이상** | 55,350 |
| **90분 이상** | 33,120 | **210분 이상** | 61,670 |
| **120분 이상** | 42,160 | **240분 이상** | 68,030 |

㉡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| 1 등급 | 2 등급 | 3 등급 | 4 등급 | 5 등급 |
|---|---|---|---|---|
| 2,306,400 | 2,083,400 | 1,485,700 | 1,370,600 | 1,177,000 |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㉣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| 구 분 | 재가급여 |
|---|---|
| 일반 | 15% |
| 기초수급권자 | 0% |
| 기타 의료수급권자 /<br>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<br>저소득층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.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 | 6%. 9% |
| 기타경감대상자 | |

② '을'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**익월 1일**에 정산하여 '갑'에게 통보한다.

③ '갑'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/현금수납 등의 방법으로 **매월 5일**까지 납부한다. 다만,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. 현금수납인 경우 '을'은 현금 수령 즉시 '갑'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다.

④ '을'은 '갑'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.

**제9조(재계약)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.

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2.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
3.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
4. 기타 '갑'과 '을'이 필요한 경우

**제10조(건강관리)**

① '을'은 '갑'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'을'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 도중 '갑'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**제11조(위급 시 조치)**

① '을'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'갑'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'갑'(또는 '병')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'병'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'병'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③ '갑'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'을'은 즉시 '병'에게 통보한다.

**제12조(개인정보 보호의무)**

① '갑'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
② '을'은 '갑'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
③ '을'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'갑'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.

④ '을'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'갑'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.

⑤ '을'은 '갑'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.

**제13조(기록 및 공개)** '을'은 '갑'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, '갑'(또는 '병')이 요구할 경우에는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배상책임)**

① '을'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'갑'(또는 '병')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.

1. 장기요양요원(또는 '을')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'갑'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2. 장기요양요원(또는 '을')의 학대로 인하여 부상 하거나,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갑'(또는 '병')은 '을'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
1.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
2.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3.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4. '갑'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
**제15조(기타)**

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.

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'갑'(또는 '병')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.